“휴일 많은 5월 아이는 어디에 맡기나요”

광주 초교, 노동절·징검다리 휴일 등 4일 휴업 지정

연가 자유롭게 못쓰는 중소기업·서비스업 종사자 ‘막막’

학부모들에게 다가올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처님오신날(22일)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비용부담이 큰데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녀를 돌봐줄 곳을 찾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준비보다 학교 쉬는 날 아이 맡길 데 찾는 게 더 힘들다”며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들이 5월 중 휴업으로 각각 지정한 날은 1일, 4일, 18일, 21일이다.

각각 근로자의 날(화요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금요일, 5월 셋째 주 금요일, 휴일과 법정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 사이에 낀 날이다.

1일 휴업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동구 지한초, 북구 용두·한울·일신초, 광산구 선운·장덕초 등 6곳이다. 4일 휴업하는 학교는 북구 각화초, 광산구 고실·새별·선창·성덕초 등 5곳이다. 18일 쉬는 학교는 광산구 하남초 한 곳, 21일을 쉬는 학교는 동구 서석·중앙·계림초, 북구 삼정·문흥중앙초 등 60곳이다.

개교기념일 등의 사유로 5월 한 달에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는 초등학교가 72개교에 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가 문닫는 날들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학교는 쉬는데 학부모들은 일터에 나가야한다는 데 있다.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 근무지가 노동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정이 다르지만 중소기업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비용보다 더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게 학부모들 설명이다.

학교들의 휴업일자를 파악한 교육청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을 독려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교육청이나 학교 측 모두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교직원이 모두 쉬는 휴업일에 돌봄교사와 방과후 강사들에게 학생들을 돌보거나 방과후수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5월 학교 휴업을 앞두고 일부 학교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지 않거나, 돌봄교실 운영 여부를 알리지 않는 초등학교도 적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

호남예술제 ‘인간 나비’ 26일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3회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부문에 참가한 나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비 의상을 입고 군무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오늘의 날씨

해뜸	05:46	달뜸	16:25
해짐	19:15	달짐	04:19

남북 정상회담 하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0/23	보 성	맑음	6/22
목 포	맑음	10/19	순 천	맑음	7/24
여 수	맑음	12/22	영 광	맑음	7/20
나 주	맑음	7/23	진 도	맑음	9/20
완 도	맑음	11/22	전 주	맑음	9/23
구 례	맑음	8/24	군 산	맑음	9/18
강 진	맑음	8/22	남 원	맑음	8/23
해 남	맑음	7/22	흑산도	맑음	9/17
장 성	맑음	7/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먼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먼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먼바다(서)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22	00:00
	17:52	12:29
여수	01:05	07:25
	13:31	19:54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5/1(화)	2(수)	3(목)	4(금)
11/23	12/23	14/23	13/24	15/19	11/18	10/23

가정의달 5월 사건·사고 ‘최다’

놀이시설 사고 다른달보다 2배…행안부 6개 관리대상 선정

‘가정의 달’인 5월에 놀이시설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16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모두 2149건으로, 월별로 보면 5월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4월에도 241건, 6월에는 230건으로 사고가 빈발했다. 이 기간 월평균 사고 건수는 35.8건이었지만, 5월 평균은 65.6건으로 2배에 가까웠다.

놀이시설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수칙 불이행이 1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783건, 개인 질환 72건, 안전시설 미비 62건, 장비 결함 24건이었다.

행안부는 관심을 둬야 할 ‘재난안전사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놀이기구 사고,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 산불, 황사(미세먼지) 등 6개를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7월부터 2·3인 병실 건보 적용

본인부담률 30~50%…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5월 16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다. /채희종기자 chae@

헌재 판결 2題

“체포과정 영장없는 주거 수색은 헌법 위배”

“긴급한 경우만 예외적 허용”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법이 형소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이다. 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날짜까지 형소법을 개정해 위헌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은 위헌”

“직업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서울고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